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3호 2015년 6월 pp.217~244
한국세무학회

국내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영기* · 정기만** · 김광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설립주체가 비영리조직인 사학과 유사한 형태의 국내 외국교육기관이 사학의 재무보고기준인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준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어떤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지 검토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외국 교육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외국의 저명 교육기관의 분교형태로 설립·운영되므로, 공공성의 범주에서 규제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서는 자금계산서 등을 주요 재무보고서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회계의 전형적인 산물인바, 예산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통제를 중시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 적합할 수 있어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의한 재무제표에 익숙한 작성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용어나 양식 등의 이해가능성은 제고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기본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에 대해서는 외국학교법인의 설립당시 및 설립이후에 추가로 투입한 자원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기본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비교가능성과 표현충실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원금보존 목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따르면, 자산구분에 '원금보존기금 ×××', 자본에 상응하는 기본금 구분에 '원금보전적립금 ×××'으로 표시하고, 운영계산서에는 '기본금대체액 ×××'으로 당기운영차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방식은 외국교육기관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금자산의 감소와 특정목적 현금및예금의 증가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표현충실한 회계처리 방법이다.

또한 학교법인이 전입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운영계산서의 수익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이는 설립주체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이후에 추가로 투입한 자원의 몫과 규모를 나타내주는 출연기본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자본적 지출 목적의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외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ungyk57@hongik.ac.kr, 주저자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kmjeong@ut.ac.kr, 공동저자

***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kimko@hongik.ac.kr, 공동저자

국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을 받아 취득한 교사나 교지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계산서에 관해서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은 학교법인과 학교간의 회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내전출금 등 각종 전출금을 운영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은 운영비용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적립금대체액 등의 항목도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기의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운영차액의 추가적인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부합되는 항목만을 외국교육기관의 운영계산서에 포함시켜 재무적 성과를 올바르게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연계된 자금계산서 대신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운영합리화는 물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외국인학교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회계기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I. 서 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입학제도와 관련해서 다루어져 왔지만, 사회·경제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유학생을 국내의 교육기관으로 유치함으로써 산업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수 학생과 외화의 해외 유출을 막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 추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유학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조사에 의하면, 유학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공교육의 규모와 맞먹을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 규모를 가늠해보기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유학·연수수지 규모를 살펴보면, 연평균 42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최대 49억 8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¹⁾.

한편 외국인들이 고려하는 투자환경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주여건은 아시아지역의 투자 유치경쟁국 가운데 동경,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²⁾. 특히

1) 2015년 e-나라지표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교육기본통계, 승인번호-33401)에서 산출하였으며, 이의 출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자체조사,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기초한 것이다.

2)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2003년 6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상공회의소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투기업 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학부모의 33.4%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교육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응답자인 46%가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의 부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조기유학생들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갖춘 교육기관도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의 교육 여건상 공교육을 담당하는 국·공립교육기관은 물론 사학마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하는 다른 나라의 정책적 노력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정부당국도 외국의 저명한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³⁾.

또한 외국교육기관이 제공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는 매력적인 해외유학의 대안이 되고 있다. 자녀의 조기유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향후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면 조기유학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로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지내야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 설립되었거나 설립예정인 ‘외국교육기관’은 법률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을 말한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교육기관은 국·공립, 사학, 외국교육기관으로 크게 3원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공공성이 특히 중시되는 국·공립 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결산 중심의 정부회계의 틀 안에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가 이루어진다. 초·중등 단계의 사학에 대해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토대가 되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으로 한다)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특례규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편 설립·운영 주체가 비영리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해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학과 외국교육기관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기반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한 바 있다.

설과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개방화, 국제화 및 자주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의 본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여기에 맞추어 재무보고의 틀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학과와 형평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의 사학과 외국교육기관 간에는 설립배경과 목적, 운영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준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외국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자녀를 대상⁴⁾으로 하고, 자립형을 표방하면서 높은 수업료를 받고 있으므로 공공성의 범주에서 규제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서는 자금계산서를 주요 재무보고서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회계의 전형적인 산물인바, 예산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통제를 중시하는 정부 및 공공 부문에 적합할 수는 있어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요구한다면 과도한 행정규제의 표본이 될 수 있다⁵⁾.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국내의 사학과 동일하게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는 재무보고 목적을 설정하고, 비영리개념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재무보고 목적과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한다) 제12조의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교육기관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종전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어떤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지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유용한 재무정보가 제공된다면 외국교육기관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외국교육기관의 운영합리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특별법 하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한다면, 외국인학교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외국인학교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실태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국내에 진출해있거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외국가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을 살펴봄

4) 국내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입학이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의 설립취지가 변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예산과 실재를 명백하게 대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제Ⅳ장에서는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의 특성과 주요 논점을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과 비교하여 정리하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한다.

Ⅱ.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실태

2003년 국내 최초로 인천의 송도 신도시 및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2005년 제정·공포되었다. 향후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내의 외국교육기관은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 내에 미국 리 아카데미의 국내분교인 대구국제학교(2010년)와 독일 FAU의 분교형식으로 설립된 부산FAU(201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채드윅국제학교(2010년) 그리고 송도의 인천글로벌 캠퍼스 내에 한국 뉴욕주립대(2011년), 조지메이슨대(2013년), 겐트대학교(2013년), 유타대(2014년)등이 운영 중이거나 교육부의 설립승인을 받아 개교예정이다⁶⁾.

한편 해외의 교육기관이 한국 내에서 운영하는 분교 또는 캠퍼스라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설립된 경우에만 외국교육기관에 해당된다. 이와 유사한 외국인학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들이 모국의 교육시스템에 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며, 국내에는 46개교(영미계 20곳, 화교계 18곳, 기타 민족계 8곳)의 외국인학교에 총 1만 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설립된 외국인학교라고 볼 수 있으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며, 내국인 입학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학교와는 차이가 난다. 이 두 교육기관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들은 일차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나, 설립 초기 정원미달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국내 학생들의 입학에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다⁷⁾.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기준이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종전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4개 외국교육기관의 재

6) 이외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불쇼이국립발레아카데미, 라스베가스주립대 등이 협약체결 상태에 있다. 부산·대구·인천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제주국제학교와 영국의 노스런던 칼리지 스쿨(NLCS)의 한국학교와 캐나다 브랜섬홀 아시아도 현재 운영 중이다.

7) 외국교육기관 내 국내학생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율되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 재학생수의 30% 이내로 하되, 개교 초기(개교 후 5년까지)에는 정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무보고 실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실명으로 표기하는 대신 A, B, C, D로 표기한다.

〈표 1〉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차이

구 분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근거법	초·중등교육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적용범위	전 국	경제자유구역
설립주체	• 외국인 • 외국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외국 비영리학교법인
내국인 입학조건	• 입학자격 : 해외거주 3년 • 입학비율 : 정원의 30%이내, 시도규칙에 의해 20%까지 추가 가능	• 입학자격 : 제한 없음 • 입학비율 : 재학생의 30% 이내(단, 2011년 이전 설립학교는 정원의 30%)

출처 : 홍영란, 2007.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 A국제학교의 재무보고

A국제학교의 기본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하고, 자본 항목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구분·표시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 상응하는 운영보고서에서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과 변동내역, 그리고 일시적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과 변동내역으로 구분·표시하고 있다. 즉, 손익계산서 내에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을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한 다음 그 차액을 운영활동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로 표시한다.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된 기능별 표시와 성격별 표시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은 현금과 현금등가물로 표시하고,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가. 재무보고의 시사점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문단 중 “in conformity with IFRS” 즉, A국제학교의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해서 작성되었다고 표기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제약이 없는 순

자산, 일시적계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구분된 순자산변동에 근거하여 운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국제회계기준의 포괄손익계산서 구조와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재무보고를 하는 대신 사실상 미국의 비영리기관과 학교회계에서 사용하는 자금회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금회계의 틀은 국내의 다른 외국교육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측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거래형태가 단순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까지 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하도록 한다면, 작성자에게는 부담을 초래하고 이용자에게는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운영보고서상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수업료 수익중에서 일시적계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의 경제적 실질은 부채(이연수익 또는 선수금)이나, 이를 부채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학교운영비 지출로 사용될 부분과 당해연도에 학교운영비 지출로 사용되지 않고,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하거나 시설투자 및 교육기자재 투자를 위해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B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B외국교육기관의 기본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다. 특히 재무상태표에는 일반 기업의 주주지분을 나타내는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다른 외국교육기관과 상이하다. 그리고 자본은 다시 불입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로 구분·표시하고,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 중 보험수리차액을 가산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구성요소에는 환율변동조정을 표시한다. 특히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을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표시하는 것은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와 다를 바가 없다.

한편 손익계산서에 상응하는 재무제표로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수익은 운영수익과 기타수익(이자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운영비용과 기타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산출하여 표시한 다음, 기타포괄손익(환율변동조정, 보험수리적손익·종업원급여)을 가감하여 당기총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구조로 작성하고 있다.

가. 재무보고의 시사점

B외국교육기관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관점에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을 하나의 기업실체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교인 뉴욕주립대가 직접 해외투자나 분교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 내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한국지사에게 투자하는 법적 형식을 취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 상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귀속주체는 미국의 본교가 델라웨어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개교 예정인 대부분의 외국교육기관은 이러한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의 사학에 적용되는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교육기관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거나 외국교육기관간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미흡할 수 있으며, 작성자에게는 부담을 초래하고 이용자에게는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C국제학교의 재무보고

C국제학교의 기본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하고, 자본 항목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본금으로 표시된 금액은 나타나있지 않다. 이는 운영주체인 외국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한국 내 대리인이 투자한 자금을 부채로 처리하기 때문이다⁸⁾. 그 결과 당기순이익의 산출이 중요하며,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상환금액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상응하는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운영수익과 기타수익(이자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기에서 운영비용과 기타비용(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 등)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산출하여 표시한 다음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가. 재무보고의 시사점

C국제학교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국내의 다른 외국교육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이 우려된다. 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의 설립·운영자에 의한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당기순이익(즉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차액)에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경제적 실질은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투자한 자본의 반환과 당기순이익을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에 의한 투자를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투자

8) 재무상태표의 주석에는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장기차입금을 상환예정이며, 개교일부터 5년간 결산상 당기순이익(즉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차액)의 50% 범위 내에서 상환하고, 이후에는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예정”으로 기재하고 있다.

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교육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자재 등의 비품취득을 위한 내부유보를 최소화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설립당시의 법률적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향후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설립단계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투자한 몫에 비례하여 배당금으로 배분할 수 없는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제약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는 본교 또는 외국학교법인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D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D외국교육기관은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준거하여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주석으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시하지는 않고 있다. 대차대조표상에서 자본금의 개념에 상응하는 ‘기본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계상된 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C국제학교와 유사하지만, B외국교육기관과는 상이하다.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상응하는 재무제표로 운영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판매관리비로 구분·표시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 대신 ‘당기운영차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당기운영차익(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은 대차대조표 상에서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한다. 결국 일반 기업의 재무보고서와 동일한 형태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대해 그 명칭만을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준거한 운영계산서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금흐름표 대신 자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아닌 ‘기말유동자산-기말유동부채’로 산출된 당기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자금수입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가. 재무보고의 시사점

D외국교육기관의 재무제표는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자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손익계산서를 명칭만 달리하여 운영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운영주체인 FAU 부산게엠베하(GmbH) 부산사무소의 초기투자액을 대차대조표에서 자본금에 상응하는 기본금으로 표시하는 대신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초기투자액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다음, 당해연도 운영비를 초과하여 이월된 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국제학교와는 달리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비용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

III. 해외 주요국의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기준이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의 교육기관이 본국에서 운영되는 방식과 회계기준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해외의 고등교육기관은 비영리는 물론 영리형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 사학이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사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회계기준도 이해관계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하여 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은 미국계 학교·대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학교·대학의 회계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다음 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하고 있는 영국과 영연방 국가인 호주, 캐나다의 회계기준 및 독일의 회계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의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주·지방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립형태의 교육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사립대학, 그리고 영리법인 형태의 학교나 대학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영리적 특성을 지닌 외국학교법인이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YSE에 상장된 DeVry Inc.와 같은 영리법인 형태의 학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며, 납세의무도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립대학·대학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없으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SFAS Statement No.117을 적용하고, 공립 대학·대학교의 경우에는 GASB Statement No.35를 준거한다⁹⁾.

구체적으로 SFAS No.117에서는 재무상태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GASB No.35에서는 순자산보고서, 수익·비용과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비영리회계 기준서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준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금회계는 내부보고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각각의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보고서 내에서 제약이 없

9) 사립대학·대학교 등 학교회계에 관한 미국의 GAAP를 구성하는 FASB의 주요 기준서는,

- Statement No.116 : Accounting for Contributions Received and Contributions Made
- Statement No.117 : Financial Statement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 Statement No.124 :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Held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등이 있다.

GASB Statement No.35는 주·지방정부의 회계에 적용되는 GASB Statement No.34 : Basic Financial Statements-and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를 수정·보완하여 제정된 기준서이다.

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으로 구분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¹⁰⁾.

가.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회계기준에 대한 시사점

주·지방정부 등의 정부나 기부자에 의한 전입금에 의해 상당한 재원이 유입되고, 사용목적이 지정된 다수의 자금에 대한 수탁책임의 이행을 특징으로 하는 재무보고의 특성을 우리나라의 사학이나 외국교육기관의 회계기준에 직접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시설 투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여건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사립교육기관을 비롯한 비영리조직에 적용되는 SFAS Statement No.117이나 공립교육기관에 적용되는 GASB No.35를 벤치마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신중범 등(2014)에 의하면 기금회계의 틀은 기부자나 주정부등으로부터 기금별로 유입된 자원과 이 자원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대학 전체의 재무적 운영성과에 이해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재무보고를 위한 일반목적 재무제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영국 및 영연방(호주 및 캐나다)과 독일

영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호주는 비영리조직이나 영리조직을 구분함이 없이 국제회계기준을 지향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지방자치 단체 역시 국제회계기준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지난 20여 년간의 기간에 걸쳐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주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운영의 자율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결과 대학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던, 주정부나 의회 역시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회계보고책임의 이행을 재무제표에 나타내기 위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보고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국의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

2013년 3월에 영리기업회계기준(일반기준)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특수기준)을 통합하여 회계

10) SFAS Statement No.117에서는 자본(영리기업) 또는 기본금(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의 개념으로 순자산(net assets)이란 용어를 재무상태표에서 사용하며, 이를 다시 unrestricted, temporarily restricted, permanently restricted net assets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각각의 순자산의 변동과 변동내역은 운영보고서(Statement of Activities)에 표시된다. 한편 GASB Statement No.35에서는 재무상태표 대신에 순자산보고서, 운영보고서 대신에 수익·비용과 순자산변동보고서라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사용한다.

기준(FRS 102)을 새로 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FRS 102 내에서 비영리조직에만 적용되는 특수기준은 ‘PBE’라는 문단으로 별도 표시한다.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이나 위원회가 제정한 업종별 회계기준에 대해 영국회계기준위원회가 검토하고 인증하는 형태이다. 그러한 예로서 영국의 고등교육회계 실무지침서는 대학회계실무자, 회계전문가, 관련 협회, 영국회계기준제정기구 등이 참여한 고등교육실무지침위원회가 제정하고, 영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인증한 교육기관에 대한 업종별 회계기준의 일종이며, 회계기준(FRS 102)에 추가 또는 보완하는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이 실무지침서에서는 수익과비용계산서, 역사적원가기준 운영차액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포괄손익계산서와 유사한 형태로 유형자산의 재평가적립금이나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이 있을 때 작성이 요구되는 총이익과손실 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나. 캐나다의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

캐나다는 2010년 9월에 학교를 포함한 전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체제를 재정비하고, 비영리조직이 다음 둘 중 하나의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은 비영리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캐나다 회계사회 편람 제3편)을 준거할 수 있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상장기업회계기준(캐나다 회계사회 편람 제2편)을 준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나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회계기준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대안은 국제회계기준(IFRS, 캐나다 회계사회 편람 제1편)을 준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비영리조직이나 교육기관이라도 비영리조직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캐나다 회계사회 편람 제3편)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캐나다는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 중심의 재무보고 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호주의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

호주는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 즈음하여 2010년 6월에 학교를 포함한 전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교육기관과 비영리조직도 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한다는 큰 틀에서 비영리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을 추가한 호주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일부 주식사항을 경감한 2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령 자산손상에 관하여 회수가능액 산정 시 사용가치 대신 측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상각후대체원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적인 규정을 ‘Aus’라는 문단으로 추가하여 비영리조직이나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라. 독일의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

최근 국제회계기준의 확산에 따라 독일 연방의 고등교육부와 자문기구에서는 대학에도 기업회계의 개념과 원칙들이 도입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¹¹⁾. 그 결과 민간부문의 회계시스템 적용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대학총장협의회와 권유 등으로 하이델베르그 대학, 비엔나대학 등의 일부대학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민간기업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가령 대차대조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한 형식으로 사업용 자산인 고정자산을 먼저 배열한 다음 유동자산을 배열하고 있다. 자본에 관한 표시는 기본금, 적립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적립금으로 처분한 금액을 차감하고, 기초이익잉여금을 가산하여 당기말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한다.

수익은 운영수익과 기타운영수익으로 구분하고, 여기에서 성격별로 분류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등을 차감하여 운영이익을 산출한 다음 재무활동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단계로, 일반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마.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회계기준에 대한 시사점

영국 및 호주 및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의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은 다른 비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독일 역시 기업회계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와 유사한 형태의 재무보고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특히 기업회계시스템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자본의 표시를 기본금, 적립금, 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운영수익에서 성격별로 분류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등을 차감하여 운영이익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재무활동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일반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구조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회계기준에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금은 외국학교법인의 출연기본금으로, 적립금은 적립기본금으로, 당기순이익은 당기운영차액으로, 이익잉여금은 누적운영차액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격별로 비용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능별로 비용을 표시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어떤 비용항목으로 지출되었는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11)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등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라는 것은 강조하면서, Lower Saxony, Hessen과 같은 일부 주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기업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IV.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의 특성과 주요 논점

이장희 외(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행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재무·회계규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통제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대학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비영리회계의 틀을 고수하거나,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재무보고 목적으로 강조하는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운영성과의 배분에 관한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하여 자칫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도 염려된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기준은 영리와 비영리 개념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외국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의 제3장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 기준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규정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회계단위,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 자산·부채의 평가 등의 주요 논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과 회계단위

국내 사학의 재무보고 준거기준은 초·중등학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¹²⁾과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은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재무제표로 자금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식부기원칙, 신뢰성 및 객관성의 원칙, 이해가능성, 계속성 및 중요성의 원칙을 기본 회계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과 법인의 일반 업무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과 지출은 자금계산서에 보고되고, 이들 거래의 결과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의 증감을 가져오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며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거래는 운영계산서에 보고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를 중심으로 대차대조표와 운영계산서 간의 연계관계를 보여준다.

회계실체와 관련해서 사립대학의 회계단위는 학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병원회계 포함)와 법인회계(법인의 일반 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그리고 산학협력단회계로 나뉘어지

12)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통칙, 정의 등에 대한 내용이며, 제2장은 예산과 결산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제3장은 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과 지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재산, 제5장에서는 물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6장에서는 장부와 서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보칙에 대한 내용이다. 동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사립 초중등학교의 경우도 2011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거하여 세입·세출결산서에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며, 각 회계단위 별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학교회계와 법인 일반 업무회계에는 사학기관 회계특례규칙이 적용되며, 부속병원회계는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거한다.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인 외국 학교법인의 특성은 국내 사학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회계적 관점에서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학교법인은 해외의 본교를 대신한 설립주체에 불과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학교의 이사진을 포함한 경영진에게 귀속된다.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진이 자원배분과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므로, 그 결과가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성파로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수탁받은 자원에 대한 회계보고책임의 이행차원에서 수행하는 재무보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반면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은 자원조달과 학교 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제철웅(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교법인은 자비로써 학교시설을 갖추되, 그 후에는 학생들의 납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 등이 학교법인의 주된 수입이어야 하는 시설물재단 법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통해 전입금을 확보하고, 설립자인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들은 자신의 재산을 끊임없이 추가적으로 학교에 기부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또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여 학교에 전입하고, 나머지 20%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의 급여 및 법인운영비와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 결과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자와 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우려하여 세부적인 규칙중심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통하여 학교와 학교법인 내외부의 자금이동을 모두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교육시설에 지나지 않고,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법적 관점이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 결과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두고 학교와 학교법인간의 거래에 재무보고의 중점을 두게 되므로 자본항목에 상응하는 기본금의 회계처리가 중요시된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회계실체로서 그 자체의 운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재무보고의 관점에서 재무제표작성과 공시의 틀이 요구된다.

2.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 목적의 재무정보를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그 정보이용자가 비교적 적고,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가 단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계처리 능력도 충

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회계기준의 내용은 단순하고 적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에 적용하게 될 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처리의 단순화와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외국교육기관 재무보고의 목적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은 우선 그 근거가 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12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교육기관 운영합리화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의 기본원칙에 제시된 재무보고의 목적은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건전성과 공공책임성 그리고 설립목적 강조하고 있다¹³⁾. 이는 일반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교육기관으로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특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 경우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까지 국내 사학에 버금가는 공공책임성이란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에 반하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건전성은 결국 재무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재무보고 목적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재무보고의 일반원칙에 고려해야 할 요소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목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회계의 일반원칙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무보고 기준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수월성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아닌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의해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의 개념에 우위를 두고 있는 국내의 사학에 대해 적용되는 회계의 제 개념과 일반원칙을 외국교육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등의 무상 제공이나 임차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차원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운영과 수탁책임의 이행여부에 대한 회계정보의 요구는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규제측면에서의 공공성보다는 오히려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특성이 회계기준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1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한편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명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동기와 목적을 관련 법령과 회계제도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저명한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동기와 목적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재무·회계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단기적인 수지균형과 장기적인 투자보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보수나 투자성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학교회계로부터의 이윤창출은 물론 운영성과를 배당으로 유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학교법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무적 성과나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기대할 수 없다면, 굳이 국내진출을 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측면에서는 수지균형 내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보수를 산출하여 경영성과를 재무제표상에 나타내 보여주면서, 외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틀을 지켜나가는 회계모델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비영리조직의 고유한 특성만을 반영한 회계모델이나 기본개념 특히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하되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식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I-2-(1)) 등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부채·수익·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중 많은 부분이 사실상 기업회계기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도 기업회계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비영리조직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이며, 더 나아가 캐나다와 호주는 비영리조직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내 외국교육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국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학교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상응하는 재무적 성과를 배당 등의 형태로 학교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현행 특별법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교육프로그램 사용료, 자문료 등을 외국교육기관의 비용항목으로 인정한다면, 본교 또는 외국학교법인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수인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투자한 몫을 적절히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에 상응하는 기본금의 개념을 회계기준에 도입하고, 외국교육기관 운영의 장·단기 재무성과를 기본금의 부가항목으로 계상한다면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원칙으로서 이해가능성, 단순성, 비교가능성, 통일성

외국교육기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통일성을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제표항목들 간에 인위적으로 통합하거나 구분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관성 있게 표시되도록 사전에 양식과 분류 및 계정과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비교가능성과 지도·감독 목적을 위하여 통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대차대조표와 운영계산서의 계정과목 명세표를 규정하고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재무제표에 익숙한 이용자와 지도·감독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정과목은 상당부분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회계기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그 밖의 사건·상황에 적용될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며,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준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준거할 대상과 순서를 명시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적용하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내용을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연도를 주요 재정지원기관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도·감독기관과 일치시킨다면 재정지원에 따른 회계보고책임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사회복지회계기준 제3조(회계연도)에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는 규정에도 찾아볼 수 있다¹⁴⁾.

3.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 등의 비영리 또는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을 <표 2>와 같이 비교·검토한 결과, 유사한 성격의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명칭과 형식 등이 상이하다. 그리고 대부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목적이 감독기관에 대한 제출용도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감독기관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표 2〉 비영리 및 교육기관 관련 회계기준에 규정된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

적용대상	사립대학 ¹⁾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²⁾	사회복지법인 ³⁾	의료기관 ⁴⁾	비영리법인 ⁵⁾	중소기업 ⁶⁾
기본재무 제표의 종류와 명칭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부속명세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기타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 1)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거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3)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4)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보건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5)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 지침서, 한국회계기준원
- 6) 법무부고시 제2013-0029호, 중소기업회계기준

이와같이 재무제표의 명칭과 형식에 차이가 나지만, 외국교육기관의 기본재무제표는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중요사항을 강조하는 식으로 간단·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과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의한 재무제표에 익숙한 작성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용어나 양식 등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지원기관 및 지도·감독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기본재무제표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한편 당기순이익이라는 단일의 경영성과 측정치가 중요성을 갖는 영리기업과 달리 외국교육기관은 회계기간동안 교육활동을 위해 투입한 자원과 자원의 사용내역을 나타내주는 정보가 중요하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운영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무적 성과나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손익계산서의 형식과 구조를 토대로 운영차액을 나타내주는 운영계산서를 작성하면 필요한 정보요구가 충족될 것이다. 재정지원기관이나, 지도·감독기관의 입장에서 지원의 필요성과 규모 그리고 지원된 자원이 의도된 목적대로 학교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운영계산서를 작성한다면 일반목적 재무제표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의 구성이 다양한 영리기업과 달리 외국학교법인이 투자한 몫을 적절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에 상응하는 기본금의 개념을 도입하고, 외국교육기관 운영의 장·단기

재무성과를 재무상태표상에 기업회계기준의 이익잉여금과 같은 성격의 누적운영차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도의 자본변동표 또는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는 불필요하다.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보고서 또는 재정상태보고서의 명칭이 제안되고 있으나, 회계기준제정 당시부터 ‘재무상태표’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은 피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물론 대부분의 비영리회계기준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 예정인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등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 차원에서 적절한 명칭이라 판단된다.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는 자금계산서, 현금흐름보고서, 자금수지계산서(일본의 학교법인) 등의 명칭이 제안되고 있으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과 관습을 존중하여 ‘현금흐름표’라는 명칭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국내 외국교육기관 중 ‘자금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D외국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교육기관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재무상태표와 자본 항목의 표시

재무상태표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영리기업의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의 인식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상응하는 운영계산서의 작성과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¹⁵⁾. 먼저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개념으로 기본금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장진형(2011)에 의하면 출연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증이며, 출자는 영리사업의 일정지분 확보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인 사학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출자를 기초로 형성되는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순자산이라는 용어가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순자산의 개념은 회계등식상의 사후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데 적절한 개념이며,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설립당시의 투자 및 설립이후 추가로 투입한 자원의 몫과 규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 제25조(기본금의 증감)에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결국 투자한 몫의 증가를 나타내는 설립주체의 지분을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학교법인이 설립당시의 투자 및 설립이후 추가로 투입한 자원의 몫과 규

15)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 지침서 등에 규정된 자본항목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잔액의 개념이 손익계산서 또는 운영계산서와의 연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기에는 순자산보다는 사학기관특례회계규칙 상의 용어인 기본금이 비교가능성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

한편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준거하여 원금보존 목적으로 별도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먼저 대차대조표의 자산구분에 '원금보존기금 $\times\times\times$ ', 자본에 상응하는 기본금 구분에 '원금보전적립금 $\times\times\times$ '으로 표시된다. 자금계산서에는 지출항목으로 '원금보존기금적립 $\times\times\times$ '으로 표시되고, 운영계산서에는 운영비용에 추가하여 '기본금대채액 $\times\times\times$ '을 차감항목으로 표시하여 당기운영차액이 산출되도록 한다. 또한 학교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의 자산구분에 '건물(토지) $\times\times\times$ ' 자본에 상응하는 기본금 구분에 '법인 $\times\times\times$ '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의 회계처리에 대해 장진형(2011)은 정부의 공교육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일정부분을 사학이 담당하도록 한 결과 사학의 지배구조인 학교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암묵적인 지분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표시수단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⁶⁾. 또한 박정우(2012)는 해방 이후 엄청난 교육열에 따른 폭발적인 교육수요와 교육재정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어 그 공적책임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사학에 대한 지원·육성차원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까지 일반 학생들의 등록금 재원으로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의 기본금이 직접 증가되도록 하는 이같은 접근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외국학교 법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외국교육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만 '건물(토지) $\times\times\times$ '와 '출연기본금 $\times\times\times$ '로 나타내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여건 및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이나 금융자산에 적립하는 경우 재무상태표 상에서 현금자산의 감소와 특정목적 현금및예금의 증가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따르면 경상전입금,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 전입금, 특정한 시설이나 설비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이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운영계산서의 수익항목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는 설립주체인 외국학교 법인이 설립이후에 추가로 투입한 자원에 해당되므로, 출연기본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적 지출 목적의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등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상의 회계처리와는 달리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을 받아 취득한 학교의 건물이나 교지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감가

16) 학교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그 재산은 기증자의 출연으로 조성되며, 출연재산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자는 법인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요구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강제할 경우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를 운영할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각비와 정부보조금 등은 상계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나. 운영계산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기업처럼 단일의 성과지표인 당기순이익을 산출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기간동안 교육활동을 위해 조달된 자원과 사용된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창걸(2012)에 의하면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의 운영계산서는 감독기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러한 예산과목에 따라 하는 결산을 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비영리조직의 활동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가 충실하게 포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인과 학교간의 구분회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금, 적립금, 운영차액의 회계처리가 일반 기업회계에 익숙한 이용자에게는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별회계전출금, 교내전출금, 비등록금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출금 등은 운영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항목은 사실상 운영비용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대차대조표상의 투자와 기타자산에 표시되는 원금보존기금이나 임의기금에 적립하는 경우 비용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립금대체액이란 항목으로 당기의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운영차액의 추가적인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원금보존기금이나 임의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운영계산서에서는 수익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차액에 환입시켜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결과 당기운영차액의 정보는 회계기간 동안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이나, 재무적 성과로서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운영차액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 나열된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에 대해 그 본래의 성격에 부합되는 수익·비용 항목만을 외국교육기관의 운영계산서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의 활동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면서 중요사항을 강조하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심적인 활동인 교육활동과 일반관리 및 기타활동 비용으로 구분·표시한다면 외국교육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산출될 것이다.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될 당기운영차액은 외국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재무·회계측면에서의 적절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보수를 나타내줄 수 있다. 이때 당기운영차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누적운영차액에 가감되는 형식으로 표시되어 운영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연계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다.

운영계산서는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비용 또는 수익항목에 대해 재정지원기관에 대해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능별로 구분된 비용에 추가

하여 성격별로 구분된 비용 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정보이용자가 외국교육기관의 활동내용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자산·부채의 평가와 표시

현행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에서는 운영수익항목을 현금기준에 따라 인식하더라도, 교육기관의 특성상 대부분의 운영수익이 등록금과 재정지원기관의 보조금 또는 외부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간귀속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발생기준에 의한 수익금액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운영비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수익, 운영비용 모두 발생기준을 준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형자산·무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재평가는 비교가능성을 고려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에 있어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의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를 준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과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 등에서도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외국교육기관회계기준에서도 유·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허용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술장학기관이나 사학기관 등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음에 비추어 외국교육기관도 향후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표시와 평가기준은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간단명료하며, 이해가능성과 회계처리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하는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은 운영계산서에서 인식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기본금 구분 중 기본금조정 항목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운영합리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재정지원기관 등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보고 기준은 종전의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과 비교하여 상이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재정지원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지방자치 단체와 본교 또는 외국학교법인, 학생·학부모 등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구조를 수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용어와 계정과목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을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외국교육기관간의 상호비교, 그리고 외국학교법인이 주로 영미

계에 속할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재무제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주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학기관회계특례규칙 상의 재무제표 종류와 명칭과는 구분된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의 구분과 표시는,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외국학교법인이 출연한 금액과 설립이후 추가 출연한 금액을 출연기본금으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적 건전성과 특정목적에 위하여 누적운영차액을 대체한 목적준비금,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금조정, 그리고 전기이월 누적운영차액에 당기운영차액을 가감하고, 목적준비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누적운영차액을 구분·표시하도록 하였다.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연도중 수행한 활동을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의 기능별로 구분한 다음, 운영수익과 대응하여 표시하는 운영계산서를 작성하고 당기운영차액을 산출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당기운영차액은 외국교육기관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무적 성과나 최소한의 수지균형 내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기운영차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누적운영차액에 가감되는 형식으로 표시되어 운영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연계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운영계산서는 재정지원기관의 정산보고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분된 비용구분 내에서 성격별로 상세하게 구분된 비용 정보도 함께 표시한다면 외국교육기관의 활동내용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유가증권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 결과 발생하는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은 운영계산서에서 인식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기본금 구분 중 기본금조정 항목에 반영하면 당기운영차액의 유용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정부보조금 중 시설·설비취득을 위한 지원금은 유·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이므로, 이를 전액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으로 계상한다면 회계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주지 못하므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경상전입금,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전입금, 특정한 시설이나 설비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외국학교법인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운영계산서의 수익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후에 추가로 투입한 자원의 몫이므로 출연기본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의 학교회계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외부감사를 담당할 적격성과 독립성을 갖춘 국제 수준의 감사인을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감독기관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외국교육기관의 운영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의 보완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외국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면 외국인학교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외국인학교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호 · 김현동. 2011.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 9-51.
- 박정우. 2012.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박태승 · 최영문. 2007. “사립대학의 회계정보 공개와 외부감사 실태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4호 : 173-197.
- 신중범. 2014. 『국내외 대학의 재무 회계 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오창걸. 201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과 대학 선진화방안”, 대학교육 : 36-41.
- 이윤원 · 노태일. 2003. “사립대학 회계상의 감가상각제도 실태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4권 제1호 : 329-367.
- 이장희 · 정도진 · 배기수. 2008. “국립대학법인 재무회계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4집 : 17-33.
- 장진형. 2011. “사학기관의 자본 및 기본금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1권 2집 : 849-866.
- 정래용. 2010. “사립대학의 감가상각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 97-135.
- 정영기 · 홍영란. 2013.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개발연구』. 한국연구재단.
- 제철웅. 2004.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모색”, 법과사회 제27권 : 445-475.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17”,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GASB. “Statement No.34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GASB. “Statement No.35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HE/FE SORP Board. “SORP 2007”, Financial Reporting Council.
- <http://www.moleg.go.kr>(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abr.business.gov.au>(호주국세청)
- <http://www.bufdg.ac.uk>(영국 재무담당자그룹)
- <http://www.fasb.org>(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
- <http://www.frc.org.uk>(영국회계기준위원회)
- <http://www.gasb.org>(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
- <http://hefce.ac.uk>(영국 고등교육위원회)
- <http://www.fehesorp.ac.uk>(영국의 산업회계실무지침)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Local Campus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hung, Young-Kee* · Jeong, Ki-Man** · Kim, Kwang-O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local campus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Free Economic Zon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both aiming for normalization of operation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s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funding for buildings, school sites. Also, in the long run, securing a stable system which enables these institutions to make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is perceived as a key success factor for maintaining financial durability and management.

At present, fiv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in operation in the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Ghent University (Belgium) and the University of Utah (U.S.) are planning to open branch campus in Korea and are currently undergoing evaluation.

In accordance to this research, we met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main campus and financial accounting manager to obtain implications concerned with developing financial standards.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of educational organization today can't be overemphasized. One of the measures of securing transparency is that an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makes public announcement of its accounting information prepared by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s with it's unique aspects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private company. When making public announce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one should consider understandability which is an important quality of information that permits its users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basic financial statements are included with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s, statement of activities, statement of cash flow almost same as the basic statement of private company. Bur their contents, chart of accounts and terms need to represent the unique character of educational organization. Also it should be differentiated with existing accounting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ongik University, Main author

**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o-author

*** Doctorial Student, Hongik University, Co-author

standards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Because it can not properly represent the economic substance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unique aspects relative to local private school.

Based on this respect, hybrid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local campus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were proposed considering both aspects of private company and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

<Key words> local campus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 accounting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